

[긴급 기자회견]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정부종합청사 건너편)

【순서】 :

- 기자회견 사회 : 유상철 노무사(노노모 사무국장)
- 참가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발언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타임오프의 법적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발언3.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 보고 : 신인수 변호사(민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석진 노무사(노노모 부회장)
- 질의 응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발 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010-4373-0518)
제 목 : [취재요청]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안내
전송일자 : 2010. 7. 19.(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20.(화) 오전 10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이하 철폐연대 법률위) 등 법률가 단체들은 7월 20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이하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법률가 공동선언에는 변호사, 법학교수, 노무사 등 관련 법률가들이 연서명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 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할 예정이며(미정),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가 ‘타임오프의 법적 문

제점'을, ▲권두섭 변호사(민변)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이석진 노무사(노동모 부회장)가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4. 법률가들은 이번 '법률가 공동선언'을 통하여 노사자치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 타임오프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소위 '타임오프 매뉴얼'을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함과 동시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자측의 행태를 중단할 것과 '타임오프 매뉴얼'의 즉각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각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법률가 공동선언'의 기자회견문과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등은 7월 20일(화) 오전 10시 기자회견 장소에서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

1. 타임오프 매뉴얼의 근본적 문제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부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할 권한만 위임하였음(노조법 제24조의2 제2항)
- 그런데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노조법에도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드는가 하면 타임오프의 사용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제한함.
-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즉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에 앞서 사용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고 노동조합의 감시·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2. 타임오프 매뉴얼 적용의 문제점

-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 내부의 행정지침 내지 의견에 불과함
-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①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기피하거나 ②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3. 구체적 사례

아래 사례들은 민주노총에서 취합한 각 현장의 타임오프 적용의 문제사례들 중 일부를 예시한 것임

가.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 7월 1일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인사명령을 내렸고,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사전에 조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함

☞ 그 밖에도 ▲ 대의원 활동 무급처리 ▲ 조합원교육 무급처리 통보 ▲ 조합업무차량 보험해지 및 유류지원 중단 ▲ 노동조합 외부전화 차단 ▲ 판매, 정비분회 사무실 철거통보 ▲ 사무기기 및 숙소 등 각종 회사 지원품 반납 요청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두산 그룹 계열사

☞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지난 7월 1일 공문을 통해 그 동안 회사가 지원한 차량과 유류비, 각종 소모품 반납을 요청함

☞ 두산중공업도 유류지원을 중단하였고 조합전임자 11명 및 임단협 관련 임시상근자 7명에 대하여 타임오프 범위 확정시까지 무급휴직에 준하여 처리하겠다고 통보함

다. S&T 그룹

☞ S&T대우(주) 역시 노동조합에 지원된 통신비(팩스 포함), 복합기 1대 등의 지원 중단을 통보함

라. 국민연금관리공단

- ☞ 사측이 실무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18개 조 60여개 항에 걸쳐 개정 요구
- ☞ 여기에는 전임자 관련 사항만이 아니라 노조간부 활동시간, 조합원 활동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마. 한국가스공사

- ☞ 사측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별도 합의안 제시
- ☞ 타임오프 고시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1만 시간에 미달하는 9천 시간을 제시하면서 한도 내 "구간"을 임의로 설정
- ☞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경우 사전·사후에 모두 활동을 보고하도록 정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 함

[긴급 기자회견문]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1. 현재의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자치 원칙과 국제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술책이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노사자치'의 영역이지, 행정당국이나 입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정부가 입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 걸쳐 우리 정부에게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노조법상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¹⁾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로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부의 무분별한 입

1) 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 제출보고서;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 제출보고서; 2007년 6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법적 간섭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맡겨두라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제정한 타임오프제 시행을 기화로 노동조합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등 사용자에 의해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유급으로 보장되는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이처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입법적으로 금지하고 유급으로 보호되는 노동조합 활동시간에 대해서조차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태도이다.

2. 현행 타임오프제도는 그 출발부터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지난 5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의결과 그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개정 노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5월 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권한이 없는 경영계 추천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노동계 추천위원들은 사전에 동원된 노동부 직원들에 둘러싸여 제대로 의견조차 제시할 수 없었다. 더구나 노동부장관이 공포한 고시는 노조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타임오프의 사용가능 인원'까지 제한함으로써 법률의 위임 범위마저 일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타임오프 고시는 권한 없는 자가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고시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노사간에 공정한 중

재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적법절차를 무시한 노동부와 그 장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조법에도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드는가 하면 타임오프의 사용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결활동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타임오프 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즉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노동부가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결재를 받는 일개 노무부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노동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지만 현장에서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세워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 기존 전임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인사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총회 및 교육 참여에 대한 무급처리, ▲ 조합업무차량 보험해지 및 유류지원 중단, ▲ 조합사무실 전화선 차단, ▲ 조합사무실 철거 통보, ▲ 조합이 사용하던 정수기, 복사기에 대한 반환 요청 등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그리고 불인정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조사무실 전화를 끊는 것이 전임자 임금지급과 무슨 상관이 있고, 노동조합 총

회와 교육시간에 참여하려는 일반 조합원들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타임오프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노동부나 사용자측이 타임오프 매뉴얼을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노동조합 단결활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현행 타임오프제를 폐기하고 전임자 관련 노조법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전임자임금 문제에 정부가 간섭하고, 그나마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하다보니 앞서 본 것처럼 현장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 하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강변하나, 그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일 뿐 현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는 옥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노사자치의 문제로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국제기준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므로 타임오프제 규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률가들은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노사자치의 원칙을 회복하고 진정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노조법상 전

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정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한편,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

넷째, 정부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0. 7. 20.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법률가 공동선언 참가자 319인 일동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법률가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총 319명)**

변호사 (총 124명)

이석태 박용일 김선수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재환
 고지환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준
 김도형 김선영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장식 김진국 김철준 김태욱 김한주 김행선 김화철 남상철
 류신환 류제성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주민 박 훈 배영근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소라미 송기호 송상교 송영섭 신영훈 신인수 심재환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윤인섭 윤지영 윤혜령 이 혁 이경우 이광철 이상희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인호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종호 이창현 이학준 이현욱 이현웅 임성택 장경욱 장동환 장석대
 장은혜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정기호 정병욱 정연순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정혜선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지훈 천낙봉 최봉태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원식 최은순 최현우
 탁경국 하주희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필규 황희석

법학교수 (총 74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호(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태욱(인하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전형배(강원대) 차성민(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구미영(박사) 김기선(박사)

노무사 (총 121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남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 현 양원표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윤 훈 이경호 이동우 이민규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수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장우 이종란 이종인 이지환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승도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세희 조형래 주용중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협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황규수 황철희